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<u>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</u>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검찰 PROSECUTION SERVICE

서울중앙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김종우

전화 02-530-4780 / 팩스 02-536-5410

보도자료

2024. 4. 29.(월)

제 목

고엽제 전우회를 동원한 분양사기 등으로 징역 9년 및 몰수·추징 180억원을 선고받아 수감 중, 변호사 등을 이용하여 범죄수익 151억원을 은닉한 범행 적발·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(제11조 제1항)
-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(부장검사 이희찬)는 '고엽제 전우회 분양 사기 사건* 주범(시행사 대표) 甲의 몰수・추징금 180억원 미납과 관련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수사하여 관련자 5명과 5개 법인을 각 기소하였음
 - *'13~'15년경 甲이 고엽제 전우회를 동원해 협박 및 점거농성 등을 하거나 해당 시행사업이 위 전우회 사업인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아파트 시행사업권 등을 불법 취득한 사건임
- ◆ 수사결과, 甲이 수감생활 중 직원 乙을 통해 허위 대여금, 용역대행비,
 출자금 납입 등 명목으로 위 분양사기 범행의 범죄수익 151억원을
 甲이 운영하는 법인들로 이전하여 범죄수익환수를 회피한 사실을 규명하였음
- 또한, 은닉된 甲의 법인 명의 차명재산(부동산, 예금 등)을 추적하여 甲으로부터 약 26억원을 추가 환수하고, 나머지 추징금 집행을 위해 부동산 등 시가 합계 70억원 상당 재산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
- 그 과정에서 甲의 분양사기 등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된 **변호사 丙, 丁**이 위 **범죄수익 중 일부(약 18억원)를 은닉하는데 가담**하고 **허위 변제내역을 항소심 양형자료로 제출**한 사실,
- 甲의 형사사건 확정으로 미결수용자 접견이 어려워지자, **변호사 丙**이 접견을 위해 甲의 前 직원 戊에게 甲을 **허위 고소하도록 한 사실**도 밝혀내었음
- 검찰은 앞으로도 자금세탁 범죄 수사 및 미납 추징금 환수를 강화하여, 범죄수익 은닉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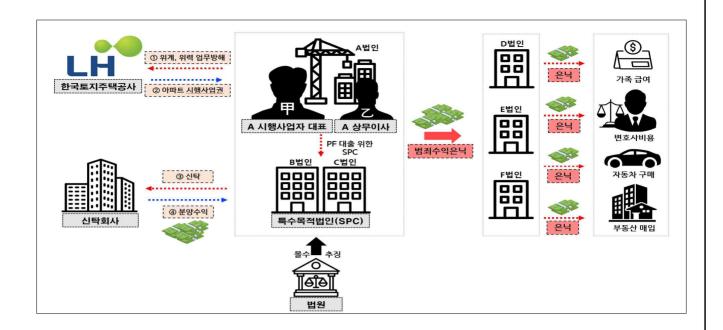
1 피고인

순번	피고인	직업	죄명	처분
1	뿌 (남, 65세)	A법인 대표	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교사	'24. 4. 29. 불구속 기소 (수형 중)
2	乙 (남, 60세)	甲의 직원(상무)		'24. 4. 29. 불구속 기소
3	丙 (남, 59세)	변호사		'24. 4. 29. 불구속 기소
4	丁 (남, 39세)	변호사	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	'24. 4. 29. 불구속 기소
5	戊 (역, 60세)	甲의 前 직원	무고	'24. 4. 29. 불구속 기소
6	B, C, D, E, F	甲이 운영하는 법인	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(양벌규정)	'24. 4. 29. 불구속 기소

2 공소사실 요지

1. 甲, 乙의 공동범행

- '13.~'15.경 위계・위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의 업무를 방해하여 위례 및 세교 택지 공급대상자 지위를 취득해 시행사업을 진행한 일로 甲이 수익금에 대한 몰수・추징 보전 결정 및 형사재판 등을 받게 되자,
 - '18. 3.~'23. 2.경 아파트 시행사업을 통해 B, C 법인 명의로 취득한 수익약 151억원을, 허위 대여금·용역대행비·유상증자 대금 납입 등 명목으로회계처리 후 甲이 운영하는 지배법인인 D, E, F로 각 이전하여 범죄수익유대재산을 정상적으로 처분한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은닉【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】
 - 甲의 지배법인 B, C, D, E, F에 대해서는 각 양벌규정 적용



2. 甲, 乙, 丙, 丁의 공동범행

- '19. 1.경 위 분양사기 등 사건의 항소심 재판 중, 형량에 참작을 받기 위해 범죄수익 18억원을 가족・법인 계좌로 순차 이체하여 범죄수익 유래재산을 정상적으로 처분한 것처럼 가장한 후, 이를 이용하여 횡령 피해금*을 허위 변제(돌려막기)하고 그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법관의 양형 심리에 관한 직무를 방해【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】
 - * 甲은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등 사건으로 '18. 1. 9. 구속 기소되어 '19. 7. 4. 징역 9년 및 추징 약 154.5억원, 몰수 25.4억원이 확정되었는바, 당시 법인 자금 일부를 임의 사용한 혐의[특경법위반(횡령), 업무상횡령] 등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됨

3. 甲, 乙, 丙의 공동범행

● '19. 7.경 甲의 업무방해 등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이 제한되자, 甲의 前 직원인 戊가 실제로는 급여 및 수당 등을 모두 지급 받고 퇴직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받지 못한 것처럼 甲을 상대로 허위 고소하도록 戊를 교사【무고교사】

4. 戊의 범행

● '19. 7.경 甲에 대한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을 위해 乙, 丙의 부탁을 받고 甲을 상대로 허위 고소장을 노동청에 제출【**무고**】

3 주요 진행 경과

- '23. 2. 검찰, 甲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수사 착수
- '23. 3.甲 운영 법인 등에 대한 계좌추적
- '23. 5. 12.甲 수용거실, 乙 주거지, 법인 사무실 등 압수수색
- '23. 8. ~ 10. 몰수 채권 약 25억원 환수
- '24. 3. 추징금 약 1억원 환수
- '24. 4. 24. 민사소송 제기
- '24. 4. 29. 각 불구속 기소

4 수사 결과

① 수감 중 지시를 통한 범죄수익 은닉 행위 규명

- 검찰은 본건 수사를 통해, 甲이 징역 9년의 실형 및 **180억원의 몰수·추징** 판결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황에서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,
 -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을 통해 직원 등에게 옥중 업무지시서를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범죄수익 유래재산을 은닉하게 한 사실을 규명하였음
 - ※ 甲은 판결 확정 이후 추징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던 상태로, 본 건 수사 개시 前까지 몰수·추징금 납부액은 약 0.56%인 1억원 가량에 불과하였음
- 본 건은 검찰이 **추징금 집행을 위한 재산 확인 과정**에서 甲의 **범죄수익 은닉 단서를 적극적으로 추적한 후**, 계좌분석 및 법인 사무실 압수수색 등 대대적 후속수사를 통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업단한 사례임

② 변호인 조력권을 남용한 변호사들의 일탈행위 확인

- 본 건 수사를 통해, 甲의 형사사건 변호인인 변호사 丙, 丁이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사건의 대응을 위해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면서,
 -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활용하여 법원을 속이거나 고소제도를 악용하여 甲에게 유리한 불법 접견*을 이어가는 등 **국가기관을 상대로 반복적인 기망** 행위를 해온 사실을 적발하였음
 - *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면,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의 경우 시간과 횟수의 제한 없이 접촉차단 시설, 교도관 참여 및 녹음·녹취 등이 없는 상태로 자료를 주고받으며 접견을 할 수 있어 일반 접견에 비해 현저히 유리
- 丙, 丁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변호인 조력권의 한계를 일탈 하여 이를 남용한 위법행위로, 변론 활동과 관련된 변호사의 전형적 모릴 해저드(Moral Hazard)를 보여주는 사례임

③ 적극적인 불법재산 환수 조치

- 최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실효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업무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은닉재산 추적 및 송무 분야를 강화한 바 있음
 - ※ 범죄수익환수부 內 범죄수익환수팀을 확대 개편하여 은닉재산 추적 전담수사관 3명과 송무 전담수사관 1명을 각 추가 배치
- 본 건도 동일한 맥락에서 범죄수익 은닉을 위한 자금세탁 범죄 수사와 미납 추징금 집행 업무를 Two-Track으로 병행함으로써,
 - 甲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불법재산 은닉행위를 수사하여 기소하는 한편, 민사소송 등 적극적 화수 조치를 통해 집행 성과를 올린 사안임 □

